

## 자폐성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### □ 세부유형 : 자폐성장애(전반성발달장애)

| 구비서류  |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  |
|---|--|
| 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 | - 진단명, 장애 상태,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, 지능 지수, GAS척도점수(발달장애 평가척도), 진단소견 기재   |
| 2. 검사결과지  | - <u>임상심리평가보고서</u><br>: 지능지수 또는 발달검사결과지, 자폐성척도(K-CARS 검사 등)<br>※ 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  |
| 3. 진료기록지  | - 자폐와 관련된 발달지연으로 진료받은 병원의 초진기록지 및 자폐적 성향, 태도, 보호자의 면담 기록이 기재된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<br>※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의 당일 진료기록지 필수 제출 |
| 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<br>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 |  |
| 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  |  |
| -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 |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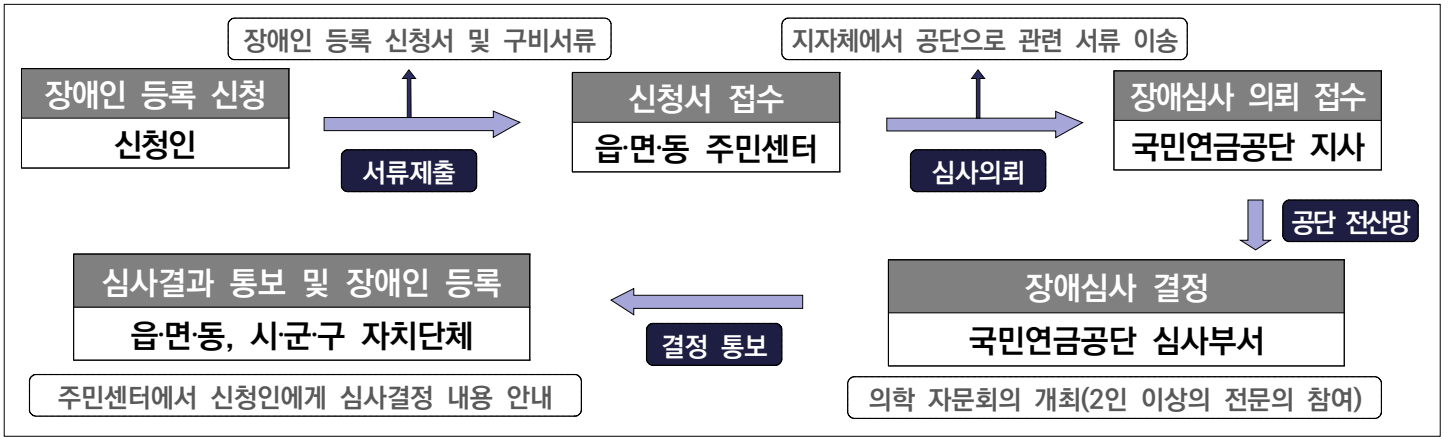
#### 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ICD-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(자폐증)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,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50 이하인 사람

# 장애인 등록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

## □ 장애인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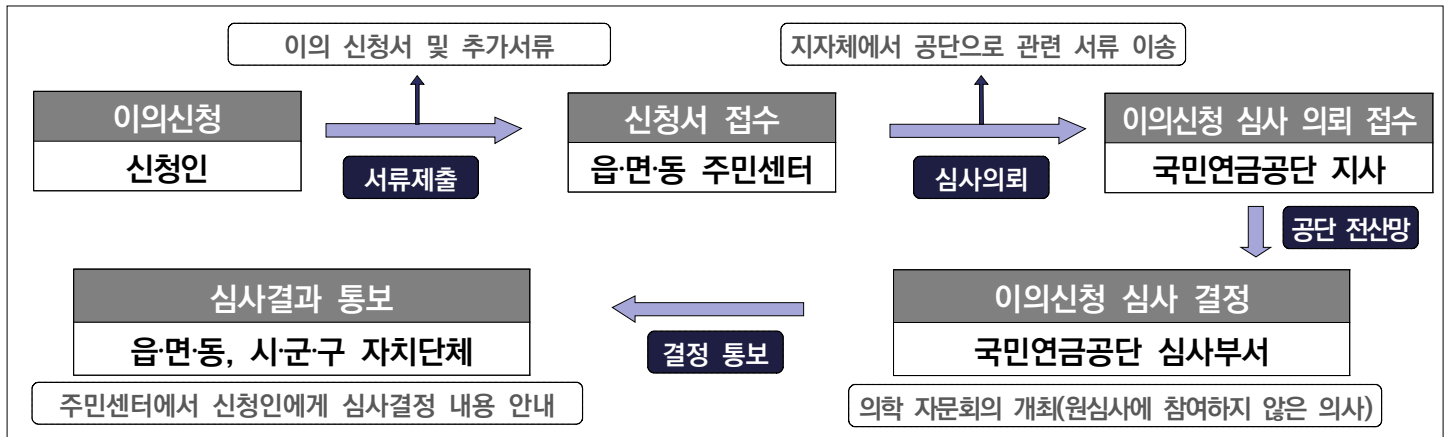
정확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장애심사를 실시합니다.



- 장애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, 소견서, 진료기록,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.
- 제출된 심사자료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- 희망 시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발급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(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)

## □ 이의신청

장애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, 관련 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.



-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(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 제1항) 합니다.
- '이의신청서' 양식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,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합니다.
-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(시·도 행정심판위원회) 또는 행정소송(행정법원)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
- ※ 단,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